

□ 개요

- (목적) 중기부 R&D 성과물 중 공공성·기술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‘혁신제품’으로 지정,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초기 판로 지원
- (신청대상)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 지원사업을 완료(우수,보통)하고 해당 기술로 사업화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
- (지원내용) ① 혁신제품 지정 ② 혁신제품 판로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① 혁신제품 지정	공공부문과 수의계약* 가능, 구매담당자 면책, 혁신제품 시범구매
② 혁신제품 판로지원	‘혁신제품-공공기관 매칭데이’ 개최,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품 및 기업 홍보로 판로 개척

*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26조,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

- (지정기간) 최대 6년(최초 3년+ 연장 3년)
- (지정절차) 모집공고(연2회) 및 신청·접수, ①공공성·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②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혁신제품 최종지정
 - ①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공공성, 혁신성, 시장성,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별
 - ② 공공성·기술혁신성 평가 및 조달적합성 검토결과,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심의 확정

구분	모집공고 및 신청접수	공공성·혁신성 평가위원회 (중기부)	조달적합성 검토 (조달청)	이해관계인 의견제출	조달정책심의 (기재부)	지정 및 인증서 발급
일정	1월, 7월	3월, 9월	4월, 10월	5월, 11월	6월, 12월	6월, 12월

- (제품등록) 지정완료 기업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혁신장터에 혁신제품 등록 후 수의계약 가능

* 공공기관이 구매를 희망 시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로 수의계약 가능